

의안 검토보고

의안 번호	제 70 호		
건 명	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		
제안(출)자	서초구청장	제안(출)년월일	1999. 5. 28
검토위원명	전문위원 김재근		

1. 검토내용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제1항과 별표2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폐지코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호적과태료부과기준 징수조례 제4조제1항과 별표2를 폐지한다.

다. 참고사항

관계법규

- 호적법 제130조, 제131조, 제132조의2
-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
- 지방자치법 제9조

합의 : 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되었음.

(기예05090-532, '99. 4.27)

2.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호적법시행규칙(대법원규칙) 제52조제6항에 호적 과태료부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, 동 조례 제4조제1항의 부과기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법규의 중복규정으로 인한 혼란과 행정의 비능률을 방지하며, '99. 4.27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동조례 제4조제1항과 별표2가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내용으로, 정비도록 심의된바 있어 정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3. 참고자료

- 관계법령
 - 호적법 제6조, 제130조, 제131조, 제132조, 제132조의2
 -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
-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

〈 관 계 법령 〉

호 적 법

제 6 조 (手數料등의 歸屬) ①이 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및 過怠料는 이를 戶籍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는 地方自治團體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第132條의2第3項 및 第133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改正 81·12·17. 84·7·30. 90·12·31>

제130조 (過怠料) 이 法에 의한 신고의 義務있는 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. <改正 75·12·31, 84·7·30. 90·12·31. 98·6·3>

제131조 (過怠料) 市, 邑, 面의 長이 제4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催告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. <改正 75·12·31. 84·7·30. 90·12·31>

제132조 (過怠料) ①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市, 邑, 面의 長은 1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. <改正 75·12·31, 84·7·30. 90·12·31>

1.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受理하지 아니한 때
 2. 戶籍의 기재를 하는 것을懈怠한 때
 3. 정당한 이유없이 戶籍簿, 除籍簿 또는 신고서 기타受理한 서류의閱覽을 거부한 때
 4. 정당한 이유없이 戶籍 또는 除去된 戶籍의 謄本, 抄本 또는 제47조의 증명서를交付하지 아니한 때
 5. 기타 戶籍事件에 관하여 직무를懈怠한 때
- ②제 1 항의 過怠料處分으로 인하여 刑事責任을 免하는 것은 아니다.

第132條의2 (過怠料의 賦課·徵收) ①第130條 및 第131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·邑·面의 長(第25條의2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出生·死亡의 申告를 받는 洞의 관할 市長·區廳長, 이하 이 條에서 같다)이 이를 賦課·徵收한다. <改正 90·12·31>

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30日이내에 당해 市·邑·面의 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.

-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·邑·面의 長으로부터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市·邑·面의 長은 자체없이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의 住所 또는 居所를 관할하는 家庭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家庭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.
-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.

로적법시행규칙

- 제52조 (과태료의 부과) ①법 제1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·읍·면의 장이 한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·사망의 신고를 받은 등의 장은 소속 시장·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95.12.26>
- ⑤삭제 <95.12.26>
- ⑥시·읍·면의 장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.

과태료 부과기준

해 태 기 간	과 태 료	
	제130조위반	제131조위반
7일미만	10,000원	20,000원
7일이상 1월미만	20,000원	40,000원
1월이상 3월미만	30,000원	60,000원
3월이상 6월미만	40,000원	80,000원
6월이상	50,000원	100,000원

제3편 총무 제2장 시민봉사

●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

(1988. 5. 1)
조례 제 18 호

개정 1991. 7.30 조례 제156호

1995.10.11 조례 제301호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호적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32조의2 및 호적법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납부의무자)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신고 또는 신청(이하 "신고"라 한다)의무자 또는 신고자로 한다.

제 3 조 (부과대상) 과태료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.

제 4 조 (부과기준 및 면제) ①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(개정 95.10.11)

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
2. 이민, 유학, 취업 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내 신고를 하지 못한 자
3.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.

제 5 조 (부과등) ①(삭제 95.10.11)

②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 개시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와 규칙 제39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.(개정 95.10.11)

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.

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처리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결정자료부와 규칙 제51호서식의 과태료징수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

제 3 편 총 무 제 2 장 시민봉사

료 부과취소(변경)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사전징수)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신고(신청서)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.(개정 95.10.11)

제 7 조 (납부독촉) 구청장은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132조의2제2항 및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(은행납입인 경우에는 20일이내)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체납처분)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3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준용규정)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

제 10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의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징수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(1991. 7. 30)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징수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(1995. 10. 11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3편 총 무 제2장 시민봉사

[별표 1]

과태료부과대상(제3조 관련)

부과대상	근거법령	과태료금액	
		법제130조 해당의 경우	법제131조 해당의 경우
1. 출생일로부터 1월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출생신고)	법 제 49조 법 제 51조	5만원 이하 5만원 "	10만원 이하 10만원 "
2. 기아를 찾은날로부터 1월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호적 정정신청)	법 제 58조	5만원 "	10만원 "
3.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재판에 의한 인지신고)	법 제 63조	5만원 "	10만원 "
4. 유언집행자 취임일로부터 1월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유언에 의한 인지신고)	법 제 64조	5만원 "	10만원 "
5. 사산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사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인지·태아의 사산신고)	법 제 65조	5만원 "	10만원 "
6.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입양취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입양취소신고)	법 제 71조	5만원 "	10만원 "
7.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파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재판에 의한 파양신고)	법 제 75조	5만원 "	10만원 "
8.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재판에 의한 혼인신고)	법 제76조 의 2	5만원 "	10만원 "

제 3 편 총 무 제 2 장 시민봉사

부과대상	근거법령	과태료금액	
		법 제130조 해당의 경우	법 제131조 해당의 경우
9.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혼인취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혼인취소신고)	법 제 78조	5만원이하	10만원이하
10.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재판에 의한 이혼신고)	법 제 81조	5만원 "	10만원 "
11. 부모가 미성년의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1월이내에 친권자 지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부모의 친권자 변동신고)	법 제 82조 제1항	5만원 "	10만원 "
12.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, 사퇴, 회복, 지정,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(친권 또는 관리권의 상실, 사퇴, 회복, 지정, 변경에 따른 친권자 변동신고)	법 제 82조 제2항	5만원 "	10만원 "
13. 후견인 취임일부터 1월이내에 후견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후견개시신고)	법 제 83조	5만원 "	10만원 "
14. 후임자 취임일부터 1월이내에 후견인 경질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후견인 경질신고)	법 제 84조	5만원 "	10만원 "
15. 후견 종료일부터 1월이내에 후견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후견종료신고)	법 제 86조	5만원 "	10만원 "
16. 사망의 사실을 안 날(발생한 날)	법 제 87조	5만원 "	10만원 "

제3편 총 무 제2장 시민봉사

부과대상	근거법령	과태료금액	
		법 제130조 해당의 경우	법 제131조 해당의 경우
부터 1월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사망신고)			
17. 사망자를 인식한날부터 10일이내 에 사망신고 하지 아니한 자(본 적불명자, 인식불능자의 사망)	법 제 93조	5만원이하	10만원이하
18. 재판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실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실종선 고신고)	법 제 95조	5만원 "	10만원 "
19. 호주승계의 사실을 안 날부터 1 월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(호주승계신고)	법 제 96조	5만원 "	10만원 "
20. 호주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승계의 사실을 안 날부터 3월이 내에 신고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자(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호주승계신고)	법 제 96조 제3항	5만원 "	10만원 "
21.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호 주승계회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호주승계회복신고)	법 제100조	5만원 "	10만원 "
22. 폐가 또는 무후가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 일가창립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(일가창립의 신고)	법 제106조	5만원 "	10만원 "
23. 국적법 제11조에 의한 고시일부 터 1월이내에 귀화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귀화신고)	법 제109조	5만원 "	10만원 "
24. 국적상실과 사실을 안 날부터 1월	법 제110조	5만원 "	10만원 "

제3편 총 무 제2장 시민봉사

부과대상	근거법령	과태료금액	
		법 제130조 해당의 경우	법 제131조 해당의 경우
이내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국적상실신고)			
25. 법무부장관의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국적회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국적회복신고)	법 제112조	5만원이하	10만원이하
26.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개명신고)	법 제113조	5만원 "	10만원 "
27.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취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취적신고)	법 제116조	5만원 "	10만원 "
28.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월이내에 취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판결에 의한 취적신고)	법 제119조	5만원 "	10만원 "
29. 호적정정허가 재판이 있었을 때 1월이내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(허가의 호적정정신청)	법 제122조	5만원 "	10만원 "
30.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월이내에 호적정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(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신청)	법 제123조	5만원 "	10만원 "

제 3 편 총 무 제 2 장 시민봉사

[별표 2]

과태료부과기준(제4조 제1항 관련)

(개정 95.10.11)

해 태 기 간	과 태 료	
	제130조 위반	제131조 위반
1 월 미 만	10,000원	20,000원
1월이상 3월미만	20,000원	40,000원
3월이상 6월미만	30,000원	60,000원
6 월 이 상	50,000원	100,000원

[별지 제1호서식] (삭제 95.10.11)